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03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이성만·김남국·김민철

김병주 · 신현영 · 오영환

이수진 · 이원택 · 임오경

임호선 · 장경태 · 정청래

주철현 · 최혜영 · 한준호

홍성국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1조 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 중 "하청"을 "하도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)	제11조(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	3
을 체결한 후 <u>하청</u> 생산 납품,	<u>하도급</u>
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	
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	
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	
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	
착하여 납품한 경우	
4. ~ 5. (생 략)	4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